

수원지방법원 2021. 11. 16 선고 2020나10123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1. 11. 16 선고 2020나101239 판결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. 11. 25 선고 2020가단75753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 유한회사 A

피고, 피항소인 B

변론종결 2021. 8. 24.

판결선고 2021. 11. 16.

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. 11. 25. 선고 2020가단75753 판결

주 문

1.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.

가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3 지분에 관하여 2019. 1. 22. 체결된

상속재산분할협의를 7,153,84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원고에게 7,153,8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

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주문과 같다(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와 그에 따른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)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‘청구원인’ 및 ‘항소이유’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)

재판장 판사 강태훈, 판사 정하경, 판사 박선민

[별지]

목록

부동산의 표시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경기도 광명시 [도로명주소] 경기도 광명시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건물의 번호 :

구 조 : 앞, 씨조 및 벽돌조

면 적 : 1층 호 52.56㎡

대지권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경기도 광명시 대 197.8㎡

대지권 종류 : 1. 소 유 권

대지권 비율 : 197.8분의 21.215

- 이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동기소 관할,

소유자 지분 중 일부 상속인 지분 전부 (13분의 2) -

청 구 원 인

1. 당사자 관계

원고는 1994. 12. 28. 설립된 법인
C의 대표이사로서 C의
의하에 C를 대표하여
입수한 자

2. 피보전채권의 존재

(1) C의 카드회원가입 및 카드거래약정

원고는 2003. 4. 30. 받은 카드
로 약정하
후 현재까
3서 각 참
조).

(2) C에 대한 채권의 채권양도양수계약 및 채권양도통지

소외 D 주식회사 및 소외 E 주식회사는 C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 일체를 2003. 4. 30. 각 채권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F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고, 양수인 소외 F 유한회사는 2008. 3. 31. 채권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G 주식회사(변경전: H 주식회사)에게, 양수인 소외 G 주식회사는 2011. 12. 28. 자산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소외 I 주식회사에게, 양수인 소외 I 주식회사는 2013. 7. 31. 자산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순차적으로 각 양도하였고, 채권양도 사실에 대하여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습니다(갑 제 3호증의 1, 2 채권매매계약서,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채권매매계약서 및 자산양도양수계약서, 갑 제5호증 채권양도통지서 각 참조).

(3) C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의 표시

원고는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양수금채권에 관하여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258670 양수금 청구의 독촉을 신청하여 2013. 12. 12. 「C은 원고에게

111,261,789원과 그 중 29,121,642원에 대하여 2014. 1. 2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」는 지급명령을 받아 C에 대하여 2014. 2. 5. 확정되었습니다.

이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지급명령에 따라 계산한 2020. 6. 22. 기준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원리금은 148,665,146원 입니다(갑 제6호증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, 갑 제7호증 채권계산서 각 참조).

3. C의 사해행위

(1) 사해행위 (2019. 1. 22. 상속재산분할협의)

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부친인 소외 망 J(이하 ‘망 J’ 라고 함)가 소유하고 있었으나 망 J는 2019. 1. 22.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C과 피고 등 상속인들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,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19. 3. 20. 접수 제 1059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(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참조).

한편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, 망 J로부터 상속받게 될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는바, 이러한 분할협의를 C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.

(2) 사해의사

C이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C은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것임을 알았을 것이라 추정됩니다.

4. 피고의 악의

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따라 이

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 받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.

5. 결 론

THOMSON

항 소 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판단 요지

제1심 판결은 이 사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함) 중 2/13 지분에 대하여 ① 피고(피항소인, 이하 '피고'라고 함)와 소외 C(이하 'C'이라 함) 사이에 2019. 1. 22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'이 사건 분할협의'라고 함)를 취소하고, ②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.

2.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범위

원고(항소인, 이하 '원고'라고 함)는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/13 지분에 대하여 ① 피고와 C 사이에 2019. 1. 22.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하고, ②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바입니다.

3. 제1심 판결의 부당성

제1심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/13 지분에 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9. 1. 22. 체결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원물반환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,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20. 11. 26.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한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피고의 명의에서 제3자의 명의로 변경되어 원고가 피

고를 상대로 청구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이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으므로 부당합니다.

4.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

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20. 11. 26. 원고가 열람한 이 사건 부동산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. 11. 4. 이후인 2020. 11. 16. 피고는 2020. 8. 29.자 매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20. 11. 16. 접수 제6066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인 소외 K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였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에 이 사실을 알 수 없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에 주장할 수 없었으며,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2020. 7. 3. 폐문부재 및 2020. 7. 25.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은 후인 2020. 8. 29.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사실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후인 2020. 11. 16.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사실로 보아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피고는 고의적으로 원고가 피고의 처분 행위를 알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입니다.

또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피고의 명의에서 제3자의 명의로 변경되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은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액배상을 구하고자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며, 이 사건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추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액배상액을 확정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한 후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.

